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공동실험실습관), 02-970-7233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2. 10. 25.

개정 2015. 9. 8.

일부개정 2021. 11. 25.

일부개정 2022. 4. 1.

일부개정 2023. 2.1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공 동실험실습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0. 25., 2021. 11. 25.>

제2장 조직과 업무

제2조(조직) 공동실험실습관(이하 "공실관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교육지원팀과 실습·연구 지원팀, 차세대반도체센터,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를 둔다. <개정 2021. 11. 25.>

제3조(업무) ① 공실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 11. 25.>

- 1. 실험·실습기자재 확충계획 및 예산수립
- 2. 실험·실습설비기준 수립
- 3. 실험·실습재료비 예산수립 및 배정
- 4. 실험·실습기자재 수리 및 성능개선
- 5. 실험·실습실 지정 및 해지
- 6. 고가장비 공동운영·관리
- 7. 기초 및 공동분야 교과목 실험 · 실습교육
- 8. 공동활용 기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
- 9. 그 밖에 공실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차세대반도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신설 2021. 11. 25.>
- 1. 차세대반도체센터 관리 ·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차세대반도체센터 관련 교육 및 실습
- 3. 차세대반도체센터 관련 산·학·연·관 협력사업
- 4. 그 밖의 차세대반도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1.

11. 25.>

- 1.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관리 ·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 및 실습
- 3.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관련 산·학·연·관 협력사업
- 4. 그 밖의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- 제4조(인원 구성) 공실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각 센터장 및 행정직원, 전문요원을 둔다. <개정 2021. 11. 25.>
- 제5조(임명 및 임기) 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센터장은 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0. 25., 2015. 9. 8., 2021. 11. 25., 2022. 4. 1.>

제3장 위원회

- 제6조(위원회 설치) 공실관과 센터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기자재선정위원회 및 기자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11. 25.>
 - 1. 실험실습운영위원회
 - 2. 기자재선정위원회
 - 3. 기자재평가위원회
- 제7조(실험실습운영위원회) ① 실험실습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실험 · 실습기자재 확충 예산 배정
 - 2. 실험·실습기자재 구매 품목 선정. 다만,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구매하는 기자재는 제외한다.
 - 3. 실험 · 실습실 운영실적 평가
 - 4. 실험·실습실 지정 및 해지
 - 5. 실험·실습재료비 배정기준 심의
 - 6. 기자재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

- 7. 규정의 제정 , 개정 , 폐지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실험 · 실습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, 위원은 각 대학장과 공과대학 2명 그 밖의 대학은 각 1명이 되며 해당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의 추천으로 관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 2. 15.>
- ③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1. 25.>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(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의를 포함)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제8조(기자재선정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자재 선정위원회(이하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공동실험실습관 공용장비 선정
 - 2. 기타 특화사업 등 기자재 선정
 -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, 위원은 전임교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 2. 15.>

- ③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1. 25.>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(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의를 포함)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제9조(기자재평가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자재평가위원회(이하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공동실험실습관 공용 기자재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
 - 2. 공동실험실습관 공용 기자재 및 그 운용에 관한 효율성 평가
 -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교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임교원과 공실관 전문요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.
 - ③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1. 25.>
 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(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의를 포함)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4장 실험실 및 기자재 운영관리

- 제10조(실험실의 구분)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실험·실습실(이하 "실험실" 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2. 10. 25.>
 - 1. 학과실험실 : 학부 또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하는 실험실
 - 2. 대학공동실험실 : 대학과 관계없이 3개 학부(과)이상 사용하는 실험실
 - 3. 공실관 실험실 : 공실관에 위치하고, 전체 대학이나 학부(과)대상으로 운영하는 실험실제10조(실험실의 구분)
- 제11조(실험실 공동활용) 대학 또는 학부(과)에서 실험실을 활용하고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장과 학부(과)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책임 및 자문교수) ① 각 실험실에는 실험실 및 기자재 운영관리를 위하여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
 - ② 책임교수는 해당 실험실을 사용하는 학부(과) 교수 중 관련 학부(과)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학장이 임명한다.
 - ③ 공실관 실험실에는 자문교수를 둘 수 있으며, 각 실의 기자재 특성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 10. 25., 2015. 9. 8.>
 - ④ 책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25.>

- 제13조(지정 및 해지) ① 대학공동실험실의 지정 및 해지는 공동실험실습관 장, 대학장, 학부(과)장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한다.
 - ② 공실관 실험실 중 활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공동실험실을 해지하고, 활용도가 높은 실험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실험실 반납 및 기자재 이전 설치) ① 제7조제4호에 따라 공동실험실로 지정하거나 해지된 경우 기존 실험실은 반납하여야 한다.
 - ② 각 대학, 학부(과)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중 공동활용을 위해 선정된 경우 해당 기자재를 공동실험실로 사용전환 한다.
- 제15조(예산배정) 공실관 실험실 예산배정은 다른 실험실보다 우선하여 배정한다. <개정 2015. 9. 8.>
- 제16조(비용부담 등의 징수 및 감면) ① 공실관 시설물(기자재 등) 사용자에 게 소요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25.>
 - ② 소요경비의 산출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0. 25., 2015. 9. 8.>
 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25.>
 - 1. 기자재를 의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여 실험·분석할 경우 <개정 2012. 10. 25.>
 - 2. 협력 또는 협약에 따른 경우 <개정 2012. 10. 25.>
 - 3. 기타 공실관의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<개정 2012. 10. 25.>

제17조(시행세칙) 공실관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0. 25., 2015. 9. 8., 2021. 11. 25.>

부칙(제652호, 2022. 4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732호, 2023. 2. 1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